

창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나644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정영덕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울, 담당변호사 김준형

변 론 종 결 2021. 6. 10.

판 결 선 고 2021. 8. 12.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0. 23. 선고 2019가단3874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1. 및 2019. 8. 8.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40,000,000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1.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40,000,000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에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쪽 제6행의 “제36720호”를 “제37620호”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이 사건 처분행위”를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지연손해금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과하여 원고가 구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용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를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득관, 판사 서민아, 판사 석동우